
The Beauty of HOLINESS

A SPIRIT-FILLED LIFE. A HOLY CALLING.

글로벌 감리교회 2026년 총회
9월 4일 금요일
—
일일 저널

입법 위원회 · 본회의
Sandton Convention Centre, Johannesburg

목차

오늘의 일정	2
변경 및 정정 사항	3
심사를 위한 청원	4
교리와 성례전	4
사역.	4
사법 행정	8
위원단 및 위원회 후보자	20

KUDO



본회의

<https://qrco.de/bgyc5q>

오늘의 일정 — 9월 4일 금요일

오전 6:30 – 오전 7:00	GC26 셔틀 오프사이트 숙소
오전 6:45 – 오전 9:30	GC26 셔틀 호텔
오전 7:00 – 오전 8:00	도착 후 휴식
오전 7:00	의사일정 위원회
오전 7:30 – 오전 9:00	등록 및 영접
오전 7:30	목회자 및 지도자 훈련(선교 체험)행 셔틀 픽업
오전 7:45	봉헌 기도
오전 7:45	예배장 입장 시작
오전 8:15 – 오전 9:20	예배
	마크 소렌슨 목사의 설교
	그리스도인의 완전: 사랑 안에서 온전해짐
	마태복음 22:37-40과 에스겔서 36장 (특히 36:24-29)
오전 9:00 – 오후 1:00	목회자 및 지도자 훈련(선교 체험)
오전 9:20 – 오전 9:30	전환
오전 9:30 – 오전 10:30	본회의
	의사일정 위원회 보고
	위원단 선거
오전 10:30 – 오전 11:00	휴식
오전 11:00 – 오후 12:30	본회의
	위원단 선거
오전 11:30	어린이 성경 캠프(선교 체험)행 셔틀
오전 11:30	기독교 제자도 토론(선교 체험)행 셔틀
오후 12:30 – 오후 1:45	식사 플랜 신청자를 위한 현장 점심 제공
오후 12:30 – 오후 2:00	GC26 셔틀 호텔
오후 1:00	목회자 및 지도자 훈련에서 돌아오는 셔틀
오후 1:00 – 오후 5:00	어린이 성경 캠프(선교 체험)
오후 1:00 – 오후 5:00	기독교 제자도 토론(선교 체험)
오후 1:15	봉헌 기도
오후 1:45 – 오후 3:15	본회의
	위원단 선거
	입법 위원회 결의 사항
오후 3:15 – 오후 3:45	휴식
오후 3:45 – 오후 6:00	본회의
	스폰서 시간
	입법 위원회 결의 사항
오후 5:00	어린이 성경 캠프 복귀 셔틀
오후 5:00	기독교 제자도 토론 복귀 셔틀
오후 6:00 – 오후 10:30	GC26 셔틀 호텔
오후 6:00 – 오후 7:30	저녁 식사는 개인 부담
오후 7:00	봉헌 기도 (본회의가 필요한 경우)
오후 7:30 – 오후 9:30	본회의 (필요한 경우)
	입법 위원회 결의 사항

변경 및 정정 사항

청원 회부

위원회 문안 정정

심의 대상 청원

위원회 조치

5일 차 달력. 일괄동의안 식별자에서 숫자는 회의 일자를, 문자는 그 처리 결과를 나타내며, A는 지지, B는 반대를 의미합니다. 일괄동의안에의 배치는 허용되는 것이며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주 초에 취해졌고 이전 판에 보고된 위원회 조치는 여기에서 반복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이를 수반하는 청원 아래에 인쇄되며, 타이핑된 것이 아니라 각 위원회의 FINAL에서 생성된다. 일반 밑줄과 취소선은 청원인의 자체 표기이고, 굵은 밑줄과 취소선은 위원회의 후속 표기이다.

교리와 성례전 — 6가지 청원

일괄동의안 DS-5B — 청원 각각

청원 1231 | ¶ 106.1 | 17쪽 개정 신앙고백

부결 결과: 찬성: 50 찬성 / 0 반대 / 1 기권.

청원안 1321 | ¶ 106.1 | 22쪽 제7조 - “원죄 또는 선천적 죄”를 “아가페 사랑과 죄”로 대체함

부결됨. 찬성: 10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서 1322 | ¶ 106.1 | 23쪽 제8조 - ‘자유 의지’를 “인간 본성”에 관한 조항으로 대체

부결 결과: 찬성: 50 찬성 / 0 반대 / 1 기권.

청원서 1323 | ¶ 106.1 | 24쪽 제2조 -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아들’에서 “원죄”라는 문구 제거...

부결 결과: 찬성: 50 찬성 / 0 반대 / 1 기권.

청원서 1326 | ¶ 106.1 | 25쪽 제20조 -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에 관하여...에서 “원죄” 제거...

부결 결과: 찬성: 50 찬성 / 0 반대 / 1 기권.

청원 1446 | ¶ 106.3 | 26쪽 결혼에 관한 명확한 교리적 기준 채택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51 찬성 / 0 반대 / 0 기권

사역 — 청원 6건

일괄동의안 MIN-5A — 지지된 청원

청원 1129 | ¶ 810 | 519쪽 사역 및 고등교육위원단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45 찬성 / 0 반대 / 1 기권

개정:

총회가 다양한 형태의 사역을 위해 정한 기준과 자격을 시행하고, 평신도 사역자, 집사목사, 장로목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며, 사역 훈련 과정을 승인하고, 연회 안수위원회에 자원을 제공하며, 후보자에 대한 적절한 심리 및 배경 평가를 권고하고, 신학교와 신학 교육 기관을 승인합니다. 총회에서 정한 다양한 사역 형태에 대한 기준과 자격 요건을 구현하고; 집사와 장로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사역 훈련 과정을 승인하며, 연회 사역위원회에 자원을 지원하며, 후보자에 대한 적절한 심리 및 신원 평가를 권고하고, 507.2조 신학교 및 신학 교육 기관의 기준을 충족하는 안수 학교 및 프로그램을 승인한다.

c. 공인 평신도 사역자. 제405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회 평신도 사역 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연회 CLM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을 제안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CLM 프로그램을 승인한다.

청원 1407 | ¶ 518 | 300쪽 업데이트 기록

개정안 가결: 찬성: 43 찬성 / 4 반대 / 2 기권.

개정:

절차. 연회 신분 변경은 연회 사역위원회 3분의 2의 추천을 받아 연회 목회자 회원 과반수 투표로 승인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연회 회기 사이에, 휴직은 감독의 추천과 감리사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사역위원회 3분의 2의 투표로 승인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파송받은 목회자는 선임지위를 제외한 모든 휴직 지위에서 해제될 것입니다.**

조건. 휴직 중인 목회자는 연회 기금에 대한 청구권이 없으나,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부담금을 통해 연회 복지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연회 위원단,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으며 총회에 목회자 대의원을 선출하는 투표권을 가진다. 그들은 연회 산하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의결권을 유지합니다., 또한 총회에 파견할 목회자 델리게이트를 선출합니다.**

출산 및 부성. **모든 목회자(부부 모두 목회자인 경우 양쪽 모두 포함)는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 또는 위탁 양육을 통해 가정에 들어올 때, 최대 3개월 또는 교회가 소재한 관할권의 법률에서 정한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출산/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부부 모두 목회자인 경우 두 사람 모두 포함)는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입양 목적의 위탁 양육을 통해 자녀가 가정에 들어오는 경우, 최대 3개월 또는 교회가 소재한 관할권의 법률에서 정한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출산/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휴직은 감리사와 협의하에 목회 협력 위원회가 허가한다. 휴직 기간 동안 목회자의 연회 신분은 변경되지 않으며, 건강 및 복지 플랜은 그대로 유지된다. **병가, 휴가 또는 기타 휴무를 포함할 수 있는 보상은, 교회가 정한 최소 2개월 이상의 기간 또는 교회가 속한 관할권의 법률에 따른 기간 중 더 긴 기간에 맞춰 급여 지급 주체에 의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보상—여기에는 병가, 연차 휴가 또는 기타 휴가가 포함될 수 있음—는 급여 지급 주체가 교회가 정한 기간(최소 2개월) 또는 해당 교회가 소재한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제공해야 한다.**

일괄동의안 MIN-5B — 청원 기각

청원 1105 | ¶ 810 | 518쪽 사역 및 고등 교육 위원회의 역할 명확화

다음은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46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106 | ¶ 810.2 | 522쪽 사역 자격 증명 발급에 있어 사역부 및 고등 교육 위원단의 역할 명확화

다음은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46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107 | ¶ 810.3 | 524쪽 승인 절차에서 사역부 및 고등 교육위원회의 역할 명확화

다음은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46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266 | ¶ 810.2 | 523쪽 ‘글로벌적 통합, 지역적 유연성’: ¶ 810.2a 조항 삭제

다음은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46 찬성 / 0 반대 / 0 기권

청원 1131 — 전문 재게재, ‘5일차 행동’이 아님

청원 1131 | ¶ 507 | 263쪽 안수 받기에 필요한 교육 요건

수정안 가결: 찬성: 31 찬성 / 13 반대 / 4 기권.

이 문구는 이전 저널 내의 1131건의 참조 내용을 모두 대체합니다.

개정된 전문 전체:

본 청원은 제507항 및 그 모든 하위 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 507. 안수를 위한 교육 요건 1. 교육 목표. 지식과 경건을 겸비하라는 존 웨슬리의 권고에 따라 글로벌감리교회에서 집사목사 또는 장로목사로 안수 받으려는 후보자는 준비 과정의 일부로 기본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글로벌교회로서, 구체적인 요건들은 세계의 다양한 지역마다 서로 다를 수 있으나(¶ 507.2), 모든 요건은 전 세계의 목회자들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로 드리도록 힘쓰라”(디모데후서 2:15) 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준비될 수 있도록 학업에 전념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글로벌교회로서 구체적인 요건은 세계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달라질 수 있으나(¶ 507.2), 모든 요건은 어디에서나 우리의 목회자가 ¶ 505의 요건을 충족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공부하였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2 Tim. 2:15).

2. 안수를 받는 길. 교육 프로그램과 기회는 지역과 생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글로벌감리교회 안에서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최고 수준의 학습과 준비를 추구해야 한다. 북미 환경에서 장로목사가 평생의 사역을 준비하도록 디자인된 역사적 학위는 일반적으로 목회학 석사(MDiv)이지만, 성서학 석사(MA), 사역학 석사(MMin), 신학 석사(MTh)와 같은 학위를 통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으며, 미국과 유럽 외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의 경우 성서학을 포함한 사역 실천 분야의 학사 학위(BA)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연령, 혹은 생활 여건으로 인해 이러한 정규 학위 과정 이수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개인의 경우, 중등학교 졸업 자격을 갖추었다면, 위원단이 승인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비학위 ‘목회학 수료증’ 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최소한 아래에 명시된 핵심 과목들을 완료해야 합니다. a. 글로벌 감리교회는 전 세계의 교육 제도에 부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 안수를 받고자 하는 이들이 가능한 최고 수준의 학문적 배움과 준비를 추구할 것을 기합니다. **안수받은 사역을 준비하는 후보자는**

목회자 자격을 위한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중등 교육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이미 갖추어야 합니다.

b. 연회 안수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후(¶ 506.3), 사역 후보자는 자신이 계획한 교육 이수 계획을 안수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유합니다. 사역 위원회는 매년 후보자와의 연대를 유지하여 교육 및 형성 과정의 진전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c. 안수받은 목회자 자격 인정을 위한 필요한 교육 요건을 충족하는 공인된 승인 교육 과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학위 기반 교육 프로그램, (2) 교과 과정 자격증 프로그램, 또는 (3) ¶ 507.7.b에 규정된 글로벌 감리교 사역학교 교육 프로그램.

d. ¶ 507.2.c의 모든 프로그램. (학위 과정, 교과 과정, 및 사역학교)는 집사목사를 위한 ¶ 507.3과 장로목사를 위한 ¶ 507.4에 규정된 바와 같이 안수를 향한 규정 과목들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수 후보자 훈련을 위하여 승인된 모든 프로그램은 ¶ 810에 따라, 승인위원회의 권고에 근거하여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단이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목회자 교육을 위해 승인된 학교 또는 프로그램 목록은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안수 후보자들은 승인된 기관 또는 프로그램 목록에서 안수를 위한 교육 요건을 이수하기 위해 선택해야 한다. 목회자 교육을 위해 승인된 학교 및 프로그램 목록은 목회 및 고등 교육위원단에서 관리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안수를 위한 교육 과정을 시작하는 학생은 상장된 승인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목록에서 선택하여 교육 요구 사항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전에 학업을 마쳤거나 등록한 학생은 승인된 학교에서 학업을 마칠 필요가 없습니다.

글로벌 감리교회는 안수 자격 수준별로 요구 과목만 이수하면 위에 나열된 학위나 자격 프로그램의 단독 혹은 복합 과정 이수를 모두 인정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에 가입하기 이전에 신학 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현재 이수 중인 학생의 경우, 그 성적표는 안수위원회의 동등성 감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신학 및 교단 정치체제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집사 목사의 교육 요건. 안수 집사목사 예정자는 총 10개 과목(약 30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집사목사로 안수받는 이들에게는 총 10과목이 요구됩니다. 이 10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약 성경 개론
- 신약 성경 개론
- 체계적 신학
- 웨슬리안 신학과 교리
- 글로벌 감리교회의 감리교 역사와 교회 체제
- 설교의 기초
- 목회 돌봄
- 전도와 선교
- 웨슬리안의 성찬과 예배에 대한 이해
- 귀납적 성경 연구 또는 해석학

4. 장로목사 교육 요건. 이전에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집사목사로 안수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8개의 필수 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10개의 추가 과목을 이수한 후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장로목사로 안수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집사목사로 안수받은 사람은 아래에 나열된 8개의 필수 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10개의 추가 과목을 이수한 후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장로목사로 안수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집사목사로 안수받은 사람은 아래에 나열된 9개의 필수 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10개의 추가 과목을 이수한 후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장로목사로 안수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목들은 승인된 학교 및 프로그램에 의해 통합하거나 분산하여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종교개혁을 통해 본 기독교의 역사
- 기독교사: 종교개혁부터 현재까지
- 변증학
- 웨슬리안 제자도와 영적 형성
- 기독교 리더십과 갈등 해결
- 추가 구약 성경 과목
- 신약 성경 수업 추가 개설
- 성령의 사역

교회 재정 및 관리

잔여 선택 과목들은 다음 영역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교회의 사명과 교회 갱신
- 다문화 사역과 전도
- 심화 설교
- 히브리어 또는 그리스어 학습
- 목회 상담

• **교회 재정 및 행정**

- 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의 임상 목회 교육(CPE)
- 종교철학
- 이스라엘 현장 조사
- 신학 선택 과목
- 예배 신학
- 어린이·청소년 사역
- 정의를 위한 복음적 비전
- 미디어와 현대적 응용
- 지도형 인턴십 또는 독립 연구

극히 드문 예외적인 경우, 지원자는 해당 생활 경험이나 학력을 근거로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해 줄 것을 사역 위원회에 재량권 행사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전체 교육 요구 사항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극히 드문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 지원자는 해당 교과 과정 요구 사항과 관련된 실무 경험이나 학력을 근거로 지역 사역 위원회에 학점 인정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교과 과정 이수에 대한 동등 학점 인정 요청은 리더십, 교회 행정 또는 목회 돌봄 분야에서만 할 수 있으며, 교과 과정 총 요건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역 및 고등교육위원단은 2027년 5월 1일까지 지역 사역 위원회에 동등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지원자들은 글로벌 감리교(Global Methodist)가 승인한 교육 파트너와 상담하여, 학부 과정을 포함한 기존 학력이 학위 과정의 학점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분별해 볼 것을 격려합니다. 이를 통해 사역에 필요한 더 높은 수준의 학습과 양성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역 위원회는 해당되는 생활 경험이나 학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할 재량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예외 사항은 전체 교육 요건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연회 사역위원회는 사역을 위한 회의 인증 후보자에 대하여, 507항에 정의된 집사목사 또는 장로목사의 교육 요건에 대한 예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외는 사역 위원회가 연회 목회자 회의에 4분의 3 다수로 권고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5. 글로벌 교육위원회, 사역 및 고등교육위원단의 일부로서 글로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위원회는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웨슬리안 신학 교육을 장려하고 연결하며, 글로벌 메소디스트 교회의 선교적·신학적 목적에 부합하는 목회자 훈련의 일관된 기준을 보장합니다.”

5. 평가. In 서면 요건과 사역 위원회의 면접에 더하여, 집사목사 및 장로목사 안수 후보자는 사역 및 고등 교육 위원단이 개발한 서면 또는 구술 시험을 통하여 자신의 역량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시험은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회가 마련한 평가 기준표를 사용하여 연회 안수위원회가 평가합니다.

6. 목회자를 위한 평생교육. 집사목사나 장로목사로 안수받은 후, 목회자는 가능한 한 적어도 매년 수업, 수련회, 세미나, 연구 휴가 등을 통해 평생 학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평생 교육 시간은 휴가나 개인 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7. 목회학 프로그램 수업 인증 및 비학위 증명서.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단은 특정 교육기관의 강좌가 이 단락에 나열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각 연회 안수위원회는 개인이 수강한 과목이 이러한 영역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단은 사역 훈련을 위한 역량과 과정을 권고하고, 연회 안수위원회와 협력하여 승인된 비학위 목회학 수료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감독합니다. a.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단은 승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특정 기관의 과정들이 본 단락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단은 사역 훈련을 위한 역량과 과정을 권고하고, 연회 안수위원회와 협력하여 승인된 학위 및 비학위 목회학 수료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감독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글로벌 감리교회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b. 글로벌 감리교회는 승인된 신학 교육 기관과의 거리, 언어 장벽,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신학 교육을 완료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예외적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교육 자격 심사를 추구하는 이들은 사역 및 고등교육위원단이 승인한 글로벌 감리교 사역학교에서 교육 요건의 이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8. 요구 사항 변경. 글로벌 감리교회 내에서 교육 요구 사항이 변경될 경우, 현재 과정을 이수 중인 후보자는 학업 시작 당시 유효했던 『교리와 장정』 (『과도기적 교리와 장정』 포함)에 명시된 요구 사항에 따라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단,

해당 후보자가 교육 과정 수료를 위해 적절한 진전을 보이고 있어야 한다. 글로벌 감리교회 내에서 교육 요건 및/또는 기관 승인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과정 중인 후보자는 후보자가 자신의 교육 완료를 향한 충분한 진전을 입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기관에서 자신의 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단 해당 기관은 후보자의 입학 당시 효력이 있던 교리와 장정(과도기적 교리와 장정을 포함함)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정식 또는 잠정 지위를 부여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9. 과목 검토: 사역 및 고등교육위원단은 승인위원회 자문위원회와 각 사역위원회 대표들과 협의하여 안수를 위해 요구되는 과목들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그 권고안을 2026년 총회에 제출한다.”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단은 승인위원회, 자문위원회 그리고 안수위원회 대표들과 협의하여, 안수를 위해 요구되는 과목들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그 권고안을 총회에 제출합니다.

사법 행정

청원 1130 584쪽 제IX부 / JPP 사법 행정 절차 통합(교리와 장정 및 사법 관행 및 절차 규칙)

수정안대로 지지됨: 찬성: 32 찬성 / 0 반대 / 0 기권

이 문구는 이전 저널 내의 1130건의 참조를 모두 대체합니다.

제목:

사법 행정 과정(장정 및 사법 관행 및 절차 규칙) 통합

근거:

2024년 사법 행정 입법 위원회의 여러 회원이 제9부와 사법 관행 및 절차 규칙의 누락된 요소, 충돌 및 불명확한 부분을 다루기 위해 독립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저희가 안내하는 원칙은 성경적이고, 명확하며, 단순하고, 실용적인 사법 절차였습니다. • 명확성과 사용의 용이성을 위해 여기서 제9부와 사법 관행 및 절차 규칙을 통합하였습니다. • 또한, 과정을 간소화하고, 일관된 처리와 실질적으로 공통 용어의 사용을 위해 과정이 개정되었습니다. • 우리는 수많은 이해관계자 대표자들과 함께 협력했습니다. 제9부의 제안된 변경 사항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마지막에 ¶ 710.2.e를 추가합니다.

본문 (선택된 단락):

¶ 901. 교회의 책임. 구약과 신약 성경에 근거한 신실함과 거룩함의 부름에서 시작하여, 글로벌 감리교회의 사법 행정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추구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화해 사역(고린도후서 5:18)에 기초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담긴 신실함과 거룩함에 대한 부르심을 바탕으로 설립된 글로벌 감리교회의 사법 행정부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화해 사역(고린도후서 5:18)에 기초합니다. 그 목적은 개인과 교회의 온전함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일치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잠언 25:9-10; 갈라디아서 6:1-2). 평신도와 목회자는 각각 자신의 교인 서약 혹은 안수 서약을 통해 서로에 대한 거룩한 신뢰의 책임 관계에 들어가며, 성령의 증거와 성경의 진리가 인도하는대로 은혜의 언약에 따라 살아가기로 약속합니다(전도서 4:9-10; 골로새서 3:16).” 모든 고소 또는 상소의 목적은 회개, 용서, 그리고 회복으로 이어져,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갈라디아서 6:1-2).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는 지혜, 공정성, 기밀 유지, 절차의 투명성 및 사랑을 중시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신실함으로 서로를 돌보고자 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에베소서 4:15; 야고보서 1:26).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이는 지혜, 공정성, 기밀 유지, 절차의 투명성 및 사랑을 중시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신실함으로 서로를 돌보고자 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에베소서 4:15; 야고보서 1:26). 은혜 안에서 행사되는 이러한 규율을 통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 그리고 세상에 베푸시는 구원의 사역을 증언합니다.

¶ 902. 정의.

1. 고소인. 공식 고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고소인이라고 부릅니다.
2. 피고소인. 고소가 제기된 상대방을 피고소인이라 부릅니다.
 3. 기밀 유지. 모든 공식 고소 및 뒷받침하는 증거는 고소 절차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예: 해당 사건의 증인)를 제외하고, 또는 절차를 이끄는 사람이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교리와 장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 통지를 받는 사람 또는 단체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기밀로 취급해야 한다. 정식 고소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모든 담당자는 관련 증거 및 서류를 기밀 유지로 취급해야 합니다.
4. 공식 수령인. 공식 고소의 공식 수령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피고소인이 현직 감독일 경우 글로벌 감독위원회 의장이 공식 수령인입니다.
 - b. 피고소인이 총리사이면 피고인의 감독이 공식 수령인입니다.

c. 피고인이 현직 감독이나 총리사가 아닌 목회자일 경우는 해당 목회자의 감리사 또는 총리사가 공식 수령인입니다.

d. 피고소인이 개체교회 교인인 경우, 해당 개체교회의 감리사가 공식 수령인입니다.

5. 과정의장. 고소 처리와 지휘함, 인도함을 담당하는 사람을 과정의장이라 부릅니다. 과정의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피고소인이 현직 감독일 경우 글로벌 감독위원회 의장이 공식 수령인입니다.

b. 피고소인이 총리사이면 피고인의 감독이 공식 수령인입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감독인 경우, 과정 의장은 감독회에서 지정합니다.

c. 피고소인이 현직 감독이 아닌 목회자인 경우, 해당 목회자의 총리사가 과정 의장입니다.

d. 피고소인이 개체교회 교인인 경우, 해당 교회의 총리사가 과정의장이 됩니다.

고소 절차를 처리하고 지휘할 책임을 맡은 사람을 절차 의장이라 부른다. 절차 의장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a) 피고소인이 현직 감독인 경우, 절차 의장은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의 의장 또는 그 의장이 지정한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 회원으로 한다.

b) 피고소인이 총리사인 경우, 절차 의장은 피고소인의 감독이 추천하고 감독회가 승인한 총리사로 한다.

c) 피고소인이 총리사이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감독인 경우, 절차 의장은 감독회가 배정한 총리사로 한다.

d) 피고소인이 현직 감독으로 섬기지 않는 목회자인 경우, 절차 의장은 그 목회자의 총리사로 한다.

e) 피고소인이 지역 교회 교인인 경우, 절차 의장은 그 지역 교회의 총리사로 한다.

6. 지정인. 과정의장은 감독자 대응 단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고소 과정의 하나 이상의 단계를 집행할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과정의장이 글로벌 감독 위원회 의장인 경우, 지정인은 글로벌 감독위원회 회원 중에서만 선정할 수 있습니다. 과정의장이 총리사인 경우, 지정인은 감리사회 회원 중에서만 선정할 수 있습니다.

7. 회의. 고소 과정상 회의 또는 청문회는 참석자 모두가 동시에 들을 수 있다면 대면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대면 또는 화상 회의를 우선적으로 권장합니다. 이와 같은 수단으로 회의에 참가한 사람은 그 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8. 사회자. 재판법원을 주재하는 정식으로 인가된 직무 담당자. 적절한 직함표기에 대해서는 ¶ 914.11을 참조하십시오.

섹션 I. 고소

¶ 903. 고소. 고소 과정은 공식 고소가 제출됨으로써 시작됩니다. 고소란 ¶ 908에 정의된 바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주장(사법적 고소) 또는 ¶ 906, 907에 정의된 바와 같은 목회 직무의 불만족스러운 수행에 대한 주장(행정적 고소)을 명시한, 서면으로 작성되고 서명된 진술을 말합니다. 제9부에서의 모든 기간 계산은 과정의장이 행정고소 또는 사법고소를 피고소인에게 전달한 날짜를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과정 의장은 피고소인이 고소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관할권이란 제IX부가 특정 단계에서 고소를 지휘, 심리, 결정하거나 달리 조치하도록 임원 또는 기구에 부여하는 권한과 책임을 의미한다. 제IX부가 유보되거나 동시인 관할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 번에 하나의 임원 또는 기구만이 일차적 관할권을 행사한다. 관할권은 지정된 임원 또는 기구가 해당 단계에 필요한 고소, 기록, 추천, 항소 또는 기소 문서를 수령할 때 시작되며, 최종 처분 시 또는 다음 임원이나 기구가 관할권을 수령할 때 종료된다. 조사, 검토, 권고, 결정 또는 항소 심리를 위해 배정된 각 기구는 교리와 장정이 그 기구에 맡긴 권한과 독립적 판단을 행사해야 한다. 절차 의장, 감독, 총리사, 감리사, 감리사회 또는 이전 단계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도 이후 기구의 심의나 결정을 지시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이 제한에는 목회자 회기에서 투표하는 목회자가 포함된다.

1. 모든 고소는 공식 수령인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현직 감독이 아닌 목회자에 대한 행정 고소의 경우, 공식 수령인은 지역 교회 목회 협력 위원회가 해결 방안을 시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직 감독으로 섬기지 않고 지역 교회에 파송되어 섬기는 목회자에 대한 행정적 고소의 경우,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수령인은 해당 지역 교회의 목회 협력 위원회가 해결책을 찾으려 시도했음을 확인해야 한다.** 시도하지 않았다면 고소는 공식 고소 이전에 목회협력 위원회로 참조되어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이 지역 교회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식 수령인은 고소를 정식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2.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수령자는 해당 고소를 즉시 해당 과정의장과 피고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고소는 과정의장이 전 과정에 걸쳐 처리합니다.

3. 고소가 접수되면 과정 의장은 고소를 행정 고소 또는 사법적 불만/고소로 지정하고, 고소 사본을 피고소인에게 전달하며, 당사자들에게 제9부 및 특히 ㉠ 925에 따라 고소 과정 설명문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과정의장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해당 고소를 행정 고소 또는 사법 고소로 지정하고, 고소장의 사본을 피고소인에게 전달하며, 고소 절차에 대한 설명을 위해 당사자들에게 제9편, 특히 ㉠ 925를 참조하도록 안내하는 서면을 고소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내야 합니다. 사법적 고소가 특정 교회법 위반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과정의장은 그 고소를 무효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a. 피고인이 현직 감독인 경우, 절차 의장은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 감독회, 해당 감독 지역 내 모든 감리직 위원회 및 피고인이 소속된 지역 감독위원회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과정 의장은 이 모든 기관에 고소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안내해야 합니다.

b. 피고소인이 현직 감독이 아닌 목회자인 경우, 과정 의장은 해당 목회자의 목회 협력 위원회(또는 동등한 위원회) 의장과 총리사(혹은 피고소인이 연회 총리사인 경우 총리사 위원회 의장)에게 행정 또는 사법적 불만/고소가 접수되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과정 의장은 이 모든 기관에 고소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안내해야 합니다.

c. 피고인이 개체교회 교인인 경우, 과정 의장은 피고인에 대한 행정 또는 사법 고소가 접수되었음을 피고인과 개체교회 교회 임원회 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책, 피고인의 개체교회 담임목사, 그리고 총리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이 지역 교회 교인인 경우, 절차 의장은 피고소인의 지역 교회의 교회 협의회 의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 피고소인의 지역 교회 담임목사 및 총리사에게 피고소인을 상대로 사법적 고소가 접수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과정 의장은 이 모든 기관에 고소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안내해야 합니다.

4. 복수 고소인 및 피고소인. 제9부에 따른 모든 절차에서 사법적 경제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a. 동일한 피고소인에 의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 또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러 개인은 함께 피고소인을 상대로 단일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단일 고소를 제기하는 다수의 당사자는 고소에 서명한 모든 당사자를 위한 고소인 역할을 할 대표 한 명을 선정해야 하며, 그 고소인은 고소 과정을 위한 지원인을 선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b.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의/요구, 행위 또는 상황에 근거하여 동일한 피고소인에 대해 여러 건의 고소가 제기되는 경우, 절차 의장은 고소 과정 동안 처리를 위해 여러 고소를 병합할 수 있으나,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한 경우, 여러 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들은 별도의 고소에 서명한 모든 당사자를 위한 고소인 역할을 할 고소 당사자 중 한 명을 선정해야 하며, 그 지정된 고소인은 고소 과정을 위한 지원인을 선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c. 하나의 고소를 제기한 복수의 당사자 또는 위의 하위항 (a) 및 (b)에 기술된 바와 같이 복수의 고소를 제기한 여러 사람이 위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절차 의장에 의해 병합되지 않는 경우, 고소 또는 고소들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는 고소 절차의 모든 단계에 출석하고 발언할 권리가 있으며, 각자는 지원인을 둘 권리가 있다.

d. 하나의 고소에 여러 피고소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각 피고소인은 고소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출석 및 진술할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e. 여러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관련된 고소의 당사자, 또는 동일한 이의/요구, 행위 또는 상황과 관련하여 동일한 피고소인에 대한 여러 고소에 지명된 당사자는 고소에 기재된 이의/요구의 분할(분리)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해당 사안은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절차 의장 또는 사회자에 의해 분할될 수 있습니다.

f. 절차적 또는 기술적 사유로 병합된 고소 또는 통합 절차 내의 개별 고소가 기각되더라도, 동일한 절차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었던 청구를 가진 개별 고소가 원래의 고소를 바탕으로 각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계속되는 것을 막지 않는다.

5. 고소가 유효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소인은 서면 답변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서면은 감독적 대응 회의의 최소 5(오)일 전까지 과정의장과 고소인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고소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과정의장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에게 고소 처리의 모든 진전 사항을 적시에 안내해야 합니다.

6. 과정 의장은 어느 한 당사자의 요청이나 자의에 의해 지정된 모든 기한을 1회에 한해 30일(30)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9부에 따라 별도 허용된 연장 이외에 추가 연장은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정에서 정한 모든 최소 기간 요건은 모든 당사자와 과정의장의 서면 동의하에 사례별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7. 고소인은 최종 결정 이전, 과정의 어떤 단계에서든 서면으로 고소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통지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은 동일한 범죄 혐의와 동일한 사실에 근거한 고소를 철회한 경우,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 904. 공정한 해결 합의서. 고소는 공정해결 합의서로 어느 단계에서나 해결 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해결 합의서란 사람과 지역 사회의 피해를 복구하고, 실질적 책임감 이행, 가능한 한 일을 바로잡고, 모든 당사자에게 치유를 가져오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고소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훈련되고 공정한 제 3의 조정자 또는 중재자의 지원을 통해 모든 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정당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 공정성, 정의, 회복에 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문화적, 인종적, 민족적, 성별 차이가 그 과정 전반에 걸쳐 주의깊게 고려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느 단계에서든 고소의 해결에는 혐의 진술, 모든 고소 당사자의 명단, 사실 조사, 상황 설명, 후속 책임감을 포함한 결의 사항 계획 또는 합의된 징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리와 장정의 조항에 대한 불순종이 포함된 주장이 있는 고소의 공정한 해결 합의서에는 피고소인이 관련 징계 요건을 모두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정한 해결합의서는 강제로 부과되어서는 안 되며, 최소한 고소인, 피고소인, 현 단계 과정을 주재하는 사람을 포함해 모든 고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공정한 해결 합의서는 관련 고소 사건의 최종 처리로 간주됩니다. 공정한 해결 합의서에 향후 요구 사항이 포함될 경우, 불이행 시의 영향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과정의장과 감독 기관(피고소인이 현직 감독인 경우 글로벌 감독 위원회, 그 외에는 감리사회)은 향후 요구 사항 이행 확인과, 필요시 제재 조치를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1. 공정한해결 합의서를 교부받는 모든 당사자는 해당 합의를 기밀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정의 결의 합의서는 피고소인이 목회자일 경우 인사기록에 보관됩니다. 공정한 정의 결의 합의서는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제외하고는 공개되거나 배포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정의 결의 합의서에는 『교리와 장정』에 수록된 이 단락이 포함되어야 한다.

2. ¶ 903.4에 설명된 다수 당사자 고소와 관련된 정의 결의 합의의 경우, 모든 원고소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의 결의 합의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통지 후 그러한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정의 결의 합의에서 탈퇴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그 당사자의 고소는 개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 905. 공정한 절차의 원칙. 글로벌감리교회의 구성원과 조직 내에 존재하는 거룩한 언약의 일부로서 다음 절차는 개인과 교회 행정 및 사법 절차의 권리를 보호한다. 아래 단락에 명시된 원칙은 행정적 또는 사법적 고소가 있을 때마다 지켜져야 한다. 모든 사안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하며, 고소를 다루는 위원회는 인종, 민족, 성별의 다양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합니다.

1. 진술권. 과정 의장, 고소인, 피고소인은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든 최종 결의 사항이 내려지기 전에 진술권을 가집니다.
2. 통지권.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세 정보와 함께 심리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통지는 모든 심리 최소 30일(30) 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기한은 고소인, 피고소인, 과정 의장의 명시적 동의하에 단축될 수 있습니다.
3. 출석 및 동반권.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모든 심리에 출석할 권리와, 회의에 발언권이 있는 지원자를 동반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력자는 글로벌감리교회 교인이어야 한다. 지정된 통역인은 지원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는 피고소인 또는 고소인의 변호사 선임에 대한 비용 또는 수수료를 보상하거나 상환하지 않는다.
4. 기록 열람. 피고소인은 심리 최소 30일(30) 전에 고소 서류를 포함하여 과정 결과 판정시 참고될 모든 기록의 열람권을 갖습니다.
5. 일방적 의사교환. 감독 대응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서류 중인 사안을 심리하는 기관의 구성원과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단, ¶ 905.6은 예외입니다. 심리 의장에게 절차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답변은 모든 당사자와 공유되어야 한다.
6. 변론의 불이행. 피고소인이 감리 면담 불참, 우편물 거부, 과정의장과 개별 소통 거부, 감리나 공식 위원회 요청에 미응답 등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라도, 이러한 결의 또는 부작위는 교회 절차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는 구실로 삼을 수 없으며, 해당 과정은 개인의 참여 없이도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7. 치유. 책임 규명 과정의 일환으로, 감독과 감리사회는 서류 중인 사항에 대한 심리, 재판, 상소 기구의 사회자와 협의하여, 그 사안으로 인해 교회, 연회, 또는 사역 환경에 중대한 혼란이 발생한 경우 치유를 위한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치유를 위한 자원에는 해당 과정에 대한 소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보 공개는 위의 정의된 대로 과정 또는 기밀 유지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8. 일사부재리. 누구나 일사부재리(같은 사안으로 반복해서 고소/제소당하지 않는) 원칙에 적용된다. 공정한 해결합의서나 행정 또는 사법 기관의 최종 결의 사항을 통해 유사한 고소가 이미 판결된 경우, 동일한 사실에 근거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새로운 고소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범죄의 새로운 사례에 대해 새로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교회 측 대리인, 또는 피고소인은 이중위험에 관한 결정에 대해,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10일 이내에 연대상소협의회(¶ 921.9.c)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고소 절차와 모든 일정 및 기한은 중지됩니다.

9. 기소 면책. 교회 (사법) 절차의 무결성을 보존하고 항상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 감독위원회 의장, 감독, 총리사, 감리사회, 목회위원회, 증인, 지원인, 변호인, 행정 심사 위원회, 집행회의에서 투표하는 목회자 및 교회 절차에 참여하는 다른 모든 사람은 그들이 고의와 악의를 가지고 기소 가능한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특정 절차에서 자신의 역할과 관련하여 제기된 고소로부터 면책권을 가진다. 특정 사법 절차에서 해당 인물의 역할과 관련하여 그에 대해 진행되는 어떠한 소송에서도 고소인/원고는 해당 인물의 행동이 고의로 악의적으로 저지른 기소 가능한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할 책임을 진다. 이 조항에 명시된 면책권은 민사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민사 소송 절차에 적용됩니다.

10. 교단 변호사. 위반 혐의 발생일 또는 그 이후에 글로벌 감독위원회, 감리사회, 연회 직원, 목회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사람은 교단 변호인으로 임명되거나 사건의 피소인 또는 고소를 제기한 사람의 변호인으로 봉사할 수 없다. 교회 측 대리인은 봉사하기로 동의함으로써, 교회법과 교리와 장정이 요구하는 바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교단 변호사는 고소를 제기한 사람의 주장을 압박함에 있어 교단의 이익을 대변한다.

11. 복수 고소인 및 피고소인. 제 9부의 모든 절차에서, 사법적 효율성을 확보하고 모든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행위 또는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러 명의 개인이 한 건의 고소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들 모두는 고소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출석하고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의 고소에 여러 피고소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각 피고소인은 고소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출석 및 진술할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b.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장이나 사실관계에 근거한 다수의 고소는, 모든 고소인의 동의 및 과정의장의 제안에 따라 한 건 또는 복수 건의 고소로 병합될 수 있습니다.

c. 복수의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이 연루된 고소에서, 어느 한 당사자라도 사건 분할(분리) 요청권을 가지며,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 분리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12.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고소 과정 중 또는 이후, 현직 감독 피고소인은 고소인 목회자 또는 관련 당사자의 파송을 감독회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11.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현직 감독 또는 총리사를 상대로 고소가 제기된 후, 피고소인이 더 이상 고소인과 파송 관계에서 섬기고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인에 대한 다음 파송 변경은 감독회의 2/3 지지로 승인되어야 한다.

12. 평판과 소통. 고소 또는 기소가 기각되거나 상소에서 뒤집힌 경우, 절차 의장은 이전에 소통이 요구되었던 모든 당사자에게 해당 사건이 해결되었음을 명시하는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한다.

¶ 906. 현직 감독이 아닌 목회자에 관한 행정 고소. 행정 고소는 무능력, 비효율성, 또는 목회 의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거나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한 목회적 직무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수행 혐의를 포함한다. 직업적 또는 개인적 비행 혐의는 행정 고소를 통해 처리하지 않고 ¶ 908-의 규정을 통해 처리한다. 행정 고소는 피소인의 사역 범위 내에 있는 평신도, 피소인의 사역에 익숙한 다른 목회자, 감리사, 연회 감리사 또는 총감리사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고소에는 불만족스러운 수행의 구체적 사례, (해당되는 경우) 대략적 날짜 및 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행정고소 처리에는 행정감독 응답이 포함되며, 필요한 경우 조사 응답, 행정 검토 및 상소가 뒤따라야 합니다.

a. 감독적 대응 - 행정 고소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고소인, 피고소인, 과정의장이 참석하는 필수적 회의입니다. 양 당사자와 과정의장은 회의에, 본인을 대신해서 발언할 수 있는 지원자를 동반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예정된 회의 최소 30일 전에 통보를 받아야 하며, 서면 고소장은 어떠한 감독적 대응 회의보다도 최소 30일 전에 피고소인에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감리대응의 목적은 가능한 한 사실을 규명하고, 상황과 설명을 고려하여, 조치가 필요한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고, 목회적 직무의 불만족스러운 직무 수행(있는 경우)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감리대응은 세 가지 가능한 결과 중 하나를 초래합니다:

1) 과정의장은 사실이나 교회법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고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각에는 감리사회의 과반수 찬성 투표가 요구됩니다(피고소인이 현직 감독이면 글로벌 감독위원회의 과반수 찬성투표). 이러한 경우 과정의장은 고소 기각의 서면 근거를 제공하고, 이를 피고소인 인사 파일에 보관하며, 사본을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2) 모든 당사자들이 공정한 합의안에 동의하고 서명하고, 이를 피고소인 인사 파일에 보관합니다.

3) 정당한 해결 합의서가 체결되지 아니하고, 과정의장이 제기된 주장에 사실상 근거와 교회법적 타당성이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고소는 심사업무 및 조사 과정을 위해 안수 위원회 내 조사 위원회에 넘겨집니다.

감독적 대응은 과정의장이 고소장을 피고소인에게 보내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각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과정의장의 재량권에 따라 1회 30일 연장 가능하며, 추가 연장은 ¶ 903.5에 따릅니다.

b. 조사 대응. 안수 위원회 내 조사 위원회가 소집되어 고소장의 진술(¶ 910 참조)에 대해 조사합니다. 사역 위원회의 행정 조사 위원회는 고소의 주장들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어야 한다(¶ 910 참조). 조사 대응의 목적은 가능한 한 사실을 규명하고 상황과 해명을 검토하며,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고, 목회적 직무 수행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위원회는 혐의와 관련된 모든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으며 증인을 면담할 수 있습니다. 증인 면담 시, 피고소인과 고소인 및 그들의 지원인은 입회하여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하면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하며, 피고소인과 고소인 및 각 지원인은 출석할 권리를 가집니다.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에게 질문하며 위원회에 진술할 기회를 갖습니다. 심리 기록()을 작성하여 피심인의 인사 파일에 보관합니다. 심리가 끝나면 위원회는 혐의 해결을 위한 집행 회의에 들어갑니다. 위원회의 조사는 고소가 조사 위원회로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고 심리가 열려야 하며, 피고소인과 고소인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한 차례 30일 연장됩니다. 근거를 포함한 위원회 결정의 서면 보고서는 피고소인의 인사 파일에 보관되며 사본은 피고소인과 고소인에게 제공합니다.

조사 대응은 다음 세 가지 결과 중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1) 위원회는 제기된 주장들에 조치를 취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위원회 다수결 투표로써 결정되어 안수 위원회에 보고됩니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주장들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안수 위원회의 정기적 감독과 연례 검토를 전제로 적절한 기준점과 후속 조치를 포함한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그 조치는 다음 사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a) 연장 교육 프로그램;
- b) 개인 상담 또는 치료;
- c) 경력 평가 프로그램;
- d) 동료 지원 및 감독;

이 결과는 위원회 다수결 투표로써 결정되어 안수 위원회에 보고됩니다.

3. 위원회는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판단하여 신임장과 자격 포기, 해임조치, 비자발적 휴직 또는 비자발적 퇴직과 같은 비자발적 신분 변경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위원회의 4분의 3 투표와 사역 위원회 과반수의 비준, 및 목회자 회기의 과반수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및 제518항에 따른 목회자 회기의 승인.

c. 행정 심의. 연회 행정검토위원회는 조사적 대응의 보고서와 사역위원회가 조사적 대응에서 사용한 전체 절차를 검토하여, 그 절차가 ¶ 906의 요구 사항과 공정한 과정(¶ 905)을 준수하였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사건의 사실관계나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회는 조사적 대응의 절차와 그 과정이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였는지를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는 해당 기관들이 조사적 대응에 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고소인, 고소인, 총리사, 감리사 회의, 안수 위원회, 그리고 목회자 회의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보고에 앞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개인 또는 단체에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하거나 오류가 무해하다고 판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시정 조치 여부는 목회위원회와 목회자 회의의 대응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행정 심의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c. 행정 심사 및 제1심 상소. 조사 대응의 보고서 및 기록, 그리고 ¶ 917에 따라 제출된 적시의 상소 통지 및 상소 근거 진술서를 접수하면, 연회 행정 심사 위원회는 행정 심사 및 제1단계 상소를 목적으로 행정 고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위원회는 조사 대응 보고서와 조사 위원회가 사용한 절차를 검토하여 ¶ 906의 요건, ¶ 905의 공정한 절차의 원칙 및 교리와 장정의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조항들이 준수되었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사건의 사실을 재심리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접수하거나, 결정의 본안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 그 심사는 행정 절차의 기록에 근거하여야 하며 상소인이 제기한 각 상소 근거를 다루어야 한다.

행정 심사 위원회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제목 아래에 구성된 서면 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요약; (2) 제시된 쟁점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절차적 사실로 한정된 사실 진술; (3) 관할권; (4) 상소 근거 및 제시된 쟁점; (5) 분석 및 근거; 그리고 (6) 결정 및 결론. 보고서는 각 상소 근거를 별도로 식별하고 다루어야 하며, 교회법 또는 절차의 오류가 발생하였는지, 그러한 오류가 무해하였는지 또는 조사 위원회의 권고나 조치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떠한 시정 조치가 요구되거나 권고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조사 위원회가 내린 본안에 관한 판단을 위원회의 판단으로 대체하여서는 안 된다.

보고서는 조사 대응에 관하여 해당 기관들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고소인, 고소인, 총리사, 감리사회, 사역 위원회 전체 및 목회자 회기에 제공되어야 한다. 행정 심사 위원회가 오류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부에 의해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개인 또는 기관이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으며, 또는 그 오류가 무해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시정 조치가 취해졌는지 여부는 이후의 모든 심사 또는 상소에 반영되어야 한다. 행정 심사 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취득한 날부터 삼십(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완료하여야 한다.

d. 상소.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모두 안수 위원회의 조사 응답에 대해 상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소는 먼저 전체 안수 위원회(조사 위원회 회원은 전체 위원회 의결에 참여하여 표결할 수 없음)에서 심리되고, 그 후 목회자 회의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양측은 조사 대응 보고서 전문을 열람할 수 있으며, 상소 제기 과정에서 양측이 추가 증거, 증언 및 진술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수 위원회의 결정은 결정 발표일로부터 삼십(30)일 이내에 감독에게 상소 통지가 제출되지 않는 한 최종적이며, 그 사본이 행정 고소의 다른 당사자에게도 송부되어야 합니다. 목회자 회의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더 이상 상소할 수 없습니다.

e. 비용. 목회자를 위한 행정 절차를 위한 모든 비용은 피고소인과 후원인의 여비와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연회가 부담한다.

2. 모든 연회는 행정 심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 710.7에 명시됩니다. 이 위원회의 유일한 목적은 입증된 행정 고소를 해결하기 위한 징계 절차가 본 부(Part)의 요구 사항에 따라 적절히 이행되는 지를 확인하는데 있습니다.

¶ 907. 현직 감독에 관한 행정 고소. 행정 고소는 무능력, 비효율성, 또는 목회 의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거나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한 목회적 직무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수행 혐의를 포함한다. 직업적 또는 개인적 비행 혐의는 행정 고소를 통해 처리하지 않고 ¶ 908-의 규정을 통해 처리한다. 행정 고소는 감독이 시무하는 감독권 구역 내의 평신도, 목회자, 감리사, 감리직 위원회 또는 다른 현직 감독에 의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고소에는 불만족스러운 수행의 구체적 사례, (해당되는 경우) 대략적 날짜 및 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직 감독에 대한 행정 고소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소인이 현직 감독인 경우, ¶ 906에 명시된 행정 과정을 따르되, 다음과 같은 구분이 적용됩니다:

a. 글로벌 감독 위원회는 ¶ 910.1에 따라 조사 위원회를 파송해야 합니다.

b. 현직 감독의 비자발적 신분 변경의 승인은 조사 위원회 4분의 3의 찬성으로 추천되고 글로벌 감독 위원회 3분의 2의 찬성(¶ 615, 605)을 받아야 합니다.

c. 고소가 제기된 연회의 연회 행정검토위원회는 행정 절차를 검토하고, 글로벌 감독위원회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d.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그러한 결정은 연대상소협의회에 상소할 수 있다.

2. 비용. 감독과 관련된 고소 사항에 대한 행정 절차의 모든 비용은 총회에서 부담한다.

¶ 908. 사법 고소 사법 고소는 아래의 열거된 고소당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포함한다. 이러한 고소는 평신도 또는 목회자, 감리사, 총리사, 또는 현직 감독에 의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아래에 명시된 기소 가능한 위반 중 최소 하나(1) 이상의 위반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위반의 구체적인 진술과 사실적 근거(필요시) 대략적 날짜와 시간 포함)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1. 기소 가능한 위법 행위. 현직 감독, 현직 감독으로 봉사하지 않는 목회자(선임 목사, 명예 목사, 행정 처분 하에 있는 목사를 포함), 또는 지방교회의 고백교인은 다음의 하나 이상의 범죄로 기소될 경우(¶ 908.3에 규정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경미한 교통 위반을 제외한 범죄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또는 유죄 인정.

b. 재정 불법 행위 또는 재정적 위법;

c. 인종, 성별 또는 성적 차별;

d. 성희롱;

e. 글로벌감리교회가 정한 교리와 실천에 부합하지 않는 교리나 관행을 홍보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예식이나 예배를 집례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f. 글로벌감리교회의 질서와 장정에 대한 불순종;

g. 글로벌 감리교회 목사 또는 목회자의 사역을 훼손하는 관계 및/또는 행동; 또는,

h.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결혼 언약 밖에서 성행위를 하는 행위 (위반 당시 교회에서 고용되어 있거나 지도자 직책을 맡고 있는 평신도에게만 적용됨); 또는

i. 아동의 학대, 착취 또는 위협에 빠뜨림.

2. 공소시효. 최초 고소장 접수 직전 6년 이내에 발생하지 않은 주장은 어떠한 사법적 고소나 기소로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성적 학대나 아동 학대 혐의 또는 성적 학대나 아동 학대 혐의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다. 휴직 기간은 (공소시효) 6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위법 시점. 어떤 사람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 기소 가능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될 수 없습니다. 제기된 모든 기소장은, 성적 학대 또는 아동 학대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효력을 가진 교리와 장정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 고소장은 고소가 접수된 당시 효력이 있는 교리와 장정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고소는 교리와 장정에 고소 가능한 위법행위로 열거된 행동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 • •

¶ 912. 조사위원회 절차

4. 조사위원회 심리

f. 기소장 및 공소사실, 심의, 표결 및 추천 ...

2) 위원회의 합리적 근거 판단 및 고소장과 명세서의 재판 회부.

a) 피고소인이 현직 감독인 경우 - 어떠한 고소나 진술서를 채택하기 위한 투표는 단순 다수결 투표를 요구합니다. 채택된 고소장과 진술서는 오(5)일 이내에 피고소인, 고소인, 연회 서기, 글로벌 감독 위원회의 의장 및 회원, 교회측 변호인, 연회 감리직 위원회 의장(해당시)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b) 피고소인이 현직 감독으로 복무하지 않는 목회자인 경우 - 어떠한 고소나 진술서를 채택하기 위한 투표는 단순 다수결 투표를 요구합니다. 조사 위원회에서 채택된 고소장과 진술서는 오(5)일 이내에 피고소인, 고소인, 연회 서기, 안수 위원회 의장, 교단측 변호인, 피고소인 소속 감리사, 총리사(피고소인이 총리사인 총리사 위원회 의장)에게 송부되어야 합니다.

c) 피고소인이 평신도인 경우 - 어떠한 고소나 진술서를 채택하기 위한 투표는 단순 다수결 투표를 요구합니다. **위원회가 채택한 고소장 및 진술서는 오(5)일 이내에 피고소인, 고소인, 총리사, 피고소인 개체교회 평신도 지도자, 교회측 변호인, 목회자, 감리사에게 보내져야 합니다.**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기소장 및 세부 혐의는 오(5)일 이내에 피고소인, 고소인, 총리사, 피고소인 지역 교회의 교회 협의회 의장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 교회를 위한 법률대리인, 목사(들), 그리고 감리사에게 보내져야 한다.

• • •

¶ 916. 법률 질의. 법률 관련 사건은 연회, 지방회 또는 구역회의의 정규 본회의 중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사회자는 정식으로 제기된 모든 법률 질의에 대해 30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1. 법률 질의와 결정은 질의가 제기된 회의의 회의록에 서기가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비서는 해당 사건과 결정을 검토 및 이익을 제기할 수 있도록 관련자나 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 법률 판결은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상소됩니다:

a. 구역회 또는 지방회. 해당 연회에서 사회하는 감독은 구역회나 지방회 회기에서 사회하는 장로목사 또는 연회 회기에서 사회하는 총리사가 내린 모든 법률 판결을 서면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연대상소협의회는 해당 결정을 확인, 수정 또는 파기해야 합니다. 해당 결정 및 심사는 상소 관련 연대상소협의회에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해당 계류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b. 연회 또는 총회. 연대상소협의회는 연회나 총회 회기에서 사회하는 감독이 내린 모든 법률 판결을 확인, 수정 또는 파기해야 합니다. 해당 결정은 상소 관련 연대상소협의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 917. 행정 결정에 대한 상소(¶ 906 참조).

1. 행정절차상의 이의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사역 위원회 조사 위원회의 결정으로부터 연회 행정 심사 위원회에; 행정 조사 위원회의 결정으로부터 연회 행정 심사 위원회에;**

b. 연회 행정심사위원회에서 연회 목회위원회 전체 회의로; 그리고

c. 연회 안수(목회)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목회자회의로.

d. 행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는 감독의 결정과 연대상소협의회의 검토를 위해 연회 목회자회의에서 제기되어야 합니다.

2. 이러한 모든 상소의 경우 상소인은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상소 통지를 제출하고 동시에 그러한 통지를 받은 임원에게 상소 사유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하며, 상소기구에서의 심리는 해당 진술서에 명시된 사유로 제한합니다.

3. 상소기구는 행정 심리의 소집권자와 상소인에게 조치의 근거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보내야 하며, 이 진술서는 상소인의 인사 파일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4. 피고소인이 행정심리 중에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상소인이 위법 행위, 교회 탈퇴, 직접 출석하지 않거나 변호인을 통해 상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 상소에 대한 최종 결정 이전에 교회 행정 절차에 관련된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상소할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해당 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한 적절한 상소 기관이 상소를 심리해야 한다.
5. 상소권은 (직무)태만 또는 기타 사유로 한번 상실된 경우 어떤 후속 상소기구에 의해 회복될 수 없습니다.
6. 상소신청권은 그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의 사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은 상소인이 생존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7. 모든 증거를 포함한 행정 절차의 기록 및 문서만이 상소심 심리에서 사용됩니다.
8. 상소기구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을 결정합니다: 행정 기구의 권고 또는 조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교회법 또는 절차 오류가 있었는가? 행정 절차의 기록과 모든 당사자의 공식 대표의 주장이 이 문제를 결정한다. 상소기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증인을 심리하지 않습니다. 상소기구에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법률 고문(변호사)을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9. 상소 기구가 (교단법 적용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개인 또는 기관에 오류를 즉시 시정하거나 오류가 무해하다고 판단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소위원회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명백한 오류를 이유로 판결을 번복하거나 새로운 심리를 위해 사건을 환송할 수 없습니다. 상소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져야 한다.
10. 모든 경우, 적절한 행정 심리 기구에서 사건의 쟁점이 한 차례 심리되면 증거 제출의 권리는 소진되나, 그 행정 심리 기구의 결정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상소할 수 있습니다. 교회법에 관한 질문은 목회자 회의에서 제기될 수 있으며, 연대상소협의회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 • •

¶ 919. 멤버십.

1. 연대상소협의회는 글로벌감리교회의 최고 사법기관이다. 위원회는 7명의 회원으로 구성됩니다. 2024년 창립 총회 소집에서 선출된 회원은 2년 또는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2024년 창립 총회 소집에서 선출된 이는 2026년 총회에서 공천 자격이 있으며, 이 2년 기간은 여기 명시된 기간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총회에서는 4명의 회원이 목회자이며 3명의 교인이 평신도로 구성됩니다. 회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합니다. 위원은 최대 2회 연속하여 6년의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위원은 6년마다 교대하여 목회자는 해당 임기 동안 4명, 평신도는 다음 6년 임기 동안 4명으로 한다. 회원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고백교인(목회자 또는 평신도)이어야 합니다. 감독은 연대상소협의회에 선출될 자격이 없다.
2. 대체자. 목회자와 평신도는 향후 6년 임기 동안 연회대상소협의회에서 재임할 수 있는 수와 동일한 수의 교체 위원으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협의회의 위원 유고시에는 선출된 순서에 따라 대체 위원이 협의회 회기 동안 해당 역할에 임해야 한다. 협의회 위원이 임기 잔여 기간을 채울 수 없는 경우, 영향을 받는 범주에서 다음으로 선출된 대체위원이 임기 잔여 기간을 채우며, 해당 임기는 최대 임기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임기 만료. 연대상소협의회 위원과 그 대체위원의 임기는 그들의 후임자가 선출되는 교단총회 폐회와 함께 만료된다.
4. 부적격. 연대상소협의회 회원은 총회 대의원으로 또는 어떤 경우든 총회 또는 연회위원회, 위원단에서 봉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연대상소협의회 회원은 총회 델리게이트, 일반 교회 위원회 또는 위원단의 회원, 또는 총리사로 섬길 자격이 없다. 회원은 제척, 이해 상충 및 ex parte 소통에 관한 ¶ 9XX의 조항에 따라 연회, 지방회 또는 지역 교회의 이사회, 협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섬길 수 있다.
5. 공천. 총회 개최 전에 행정공천위원회는 교회의 지리, 인종, 성별 다양성을 대표하기에 적합한 평신도 및 목회자 범주의 적절한 인원(21)명으로 구성된 총 스물한(21)명을 다수결로 공천해야 합니다. 교단총회 첫날에 목회자 또는 평신도의 공천을 회의석상에서 할 수 있다. 이름, 연회 멤버십, 100자 이내 이력 등은 최소한 선거 사십팔(48) 시간 전에, 총회 대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합니다. 선거는 논의나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와 다수결로 이루어진다. 공천 및 선거. 연대상소협의회 회원 및 예비위원의 공천과 선거는 제8부에 규정된 연대 위원회 위원 선거를 위해 약속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920. 조직 및 절차.

1. 사법 관행 및 절차. 연대상소협의회는 교리와 장정의 조항과 상충되지 않는 자체 실무 및 절차 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여기에는 협의회 회장, 부회장, 그리고 총무가 선출이 포함되며, 이들은 협의회 회원들이 선출합니다. 그러한 실무 및 절차 규칙은 공개되어야 하며 연대상소협의회 웹사이트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계속 게시되어야 한다.

2. 회의 시기와 장소. 연대상소협의회는 총회가 회집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하며, 총회가 폐회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또한 매 회계연도에 최소 한 차례 추가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와 장소에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의 물리적 소집을 방해하는 국제적 또는 지역적 상황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협의회는 3분의 2의 찬성으로 전자 또는 기타 디지털 수단을 통해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3. 정족수. 정식으로 참석한 7명의 회원 또는 대체자가 정족수를 구성합니다. 평신도 1명과 목회자 1명이 질병이나 다른 이유로 사퇴한 경우 대체위원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교단총회의 어떤 결정이 위헌이라고 선언하려면 최소 5명의 협의회 의원 또는 정당하게 회의에 참석한 대체 위원들의 찬성 투표가 필요합니다. 다른 모든 사안에 있어서 연대상소협의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재판 일람표 연대상소협의회 서기는 청구서 제출 마감일 최소 삼십(30)일 전에 각 모임에서 결정될 사안의 목록을 공표해야 합니다. 계류 중인 각 사안에 대한 설명은 요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 계류 중인 사안의 주제를 충분히 알 수 있게 준비되어야 한다.
5. 공개 접근. 교리와 장정에 따라 연대상소협의회에 적법하게 제출된 모든 자료는 공적 기록으로 간주되며, 글로벌 감리교회 목회자 및 교인들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연대상소협의회는 다수결 투표로, 비밀 정보는 공개 기록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계류 중인 사안에 관한 협의회의 심의는 비공개이다. 협의회의 그 밖의 모든 심의 또는 토론은 협의회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하며 그러한 회의록은 연대상소협의회 웹사이트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게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협의회는 모든 사안에 대한 구두 변론을 위해 대중에게 공개되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 921. 연대상소협의회 위원들의 의무 및 책임

목적. 연대상소협의회 회원은 공정하게 행동하여야 하며, 교회의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실제적 또는 인식된 이해 상충, 편향 또는 부적절성의 외관을 피하여야 한다. 이 정책은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는 모든 항소, 검토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한 모든 참여를 규율합니다.

외부인과의 연락 및 사전 참여 금지.

섹션 VI - 연대상소협의회는 어느 회원도, 위원회에 항소, 확인 판결 요청, 또는 기타 사법 절차로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만한 사안에 대하여 어떠한 자나 단체에게도 조언, 상담 또는 의견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어떠한 회원도, 공식 절차 외에 어떠한 당사자, 상담자, 연회 임원 또는 기타 관련 인사와도 해당 사안에 관한 토론, 회의, 서신 왕래, 기타 의사소통(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금지는 사안이 접수되거나 접수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때부터 협의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고 모든 재심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적용된다.

,,

회원이 우연히 토론에 참여하거나, 이후 위원회에 상정될 사안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해당 회원은 해당 의사소통의 경위와 내용을 즉시 서면으로 의장(의장이 해당 회원인 경우에는 부의장 또는 전체 위원회)에게 공개해야 한다.

재정적 및 개인적 이해 상충. 회원 또는 회원의 직계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혹은 회원의 가정에 거주하는 자)이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때 이해 상충이 존재합니다:

해당 사안에 영향을 받는 어떠한 법인, 계약, 보조금 또는 결과에 대한 직간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보상, 투자, 소유권 또는 잠재적 이익이나 손실을 포함); 또는

회원의 객관성을 저해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그 밖의 개인적, 직업적, 관계적 사정 또는 과거의 관련 사항. 이 경우 회원은 서면으로 해당 이해 상충을 완전히 공개하고, 그 사안에 대한 모든 토론, 심의, 표결에서 스스로를 회피하여야 합니다. 회피는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연회 특정 사안. 섹션 VI - 연대상소협의회는 회원이 특정 연회의 목회자 회원, 평신도 회원 또는 거주자인 경우, 그 연회만을 특정하고 고유하게 영향을 미치는 안건(징계 조치로 인한 항소, 헌법적 쟁점, 자금 배정 결정, 행정적 검토 등)을 다루는 토론, 심의, 표결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조항은 연회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안, 또는 그 주제가 원 연회를 넘어서는 범위에 적용되는 연회 법률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원은 반드시 회피하여야 하며, 그 회피는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공개 의무. 안건에 상정된 사안에 대한 회의나 심의 전에, 각 회원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모든 이해 상충 또는 일방 관여를 지체 없이 완전히 공개해야 합니다.

회피 및 정족수 절차.

제척은 개별 회원의 일차적 책임이나, 모든 회원은 다른 회원과 관련된 이해 상충 또는 ex parte 관여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의장(부재 시 위원회)은 그 질문에 대해 판결하며, 이 판결은 전체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남은 회원의 과반수 투표로 최종 결정됩니다. 의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협의회 전체가 그 문제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회피된 회원은 해당 안건에 한해 대체 회원으로 교체됩니다.

비서는 모든 공개, 회피 및 관련 표결에 대해 (적절한 기밀 유지 하에) 공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921 ¶ 922.~~ 관할권.

1. 연대상소협의회는 출석하여 투표한 총회 대의원의 5분의 1의 상소 또는 감독회의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회의 어떤 조치가 본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연대상소협의회는 출석하여 투표한 총회 대의원의 5분의 1 또는 감독회의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제안된 입법이 본 교리와 장정과 상충되는지 여부에 대한 선언적 결정을 내립니다.
3. 연대상소협의회는 해당 연회에 출석해 투표한 대의원의 5분의 1이 항소할 경우, 연회의 어떤 행위가 본 교리와 장정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합니다.
4. 연대상소협의회는 총회가 창설하거나 승인한 기구 또는 연회가 창설하거나 승인한 기구가 취한 모든 조치의 합법성을 그 조치가 취해진 총회 또는 연회의 대의원 5분의 1의 출석과 투표 또는 창설 또는 승인한 기구의 위원 3분의 1의 출석과 투표 또는 감독회의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5. 연대상소협의회는 총회 또는 연회가 창설하거나 권한을 부여한 기관이나 단체가 취한 조치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연회 출석 대의원 5분의 1의 청원과 연회의 의결에 따라 이송명령을 결정할 수 있다.
6. 연대상소협의회는 교리와 장정 또는 그 일부의 의미, 적용, 효력에 관한 선언적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또는 연회의 어떠한 행위나 입법의 적법성, 의미, 적용, 효력에 관하여 선언적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이송명령서를 부여할 수 있다. 사건 이송 명령서의 청원은 다음에 의해 제출될 수 있습니다:
 - a. 총회 출석 투표 대의원 5분의 1의 찬성으로;
 - b. 감독회의 출석 투표 감독 과반수의 찬성으로;
 - c. 총회 또는 연회가 창설 또는 인가한 기관, 또는 해당 업무에 관련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그 기관 관리기구의 과반수 투표로; 혹은
 - d. 연회 출석 투표 대의원 5분의 1의 찬성으로.
7. 연대상소협의회는 연회나 총회에서 감독회의가 내린 법의 결정을 확인, 수정 또는 파기한다. 그러한 감독의 법률 결정은 연대상소협의회의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결정이 내려진 연회를 제외하고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8. 연대상소협의회는 임시 연회항소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교리와 장정, 연대상소협의회의 선행 판결, 또는 다른 연회항소위원회의 교회법 관련 결의 사항과 상충한다고 보이면, 그 결정을 검토하기 위한 사건 이송 명령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9. 연대상소협의회는 구(9)부에 따라 회부된 모든 사안에 대해 판결할 수 있습니다.
10. 연대상소협의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 a. **~~목회자 회원 또는 현직 감독의 재판에 관한 재판 법원의 모든 결정을 확정, 수정, 환송 또는 파기한다(¶ 915.8).~~**
 - b. **~~교회가 상소한 경우, 조사 위원회 또는 재판 법원의 상소된 모든 결정을 확정하거나 새로운 심리 또는 재판을 위해 환송한다(¶ 915.10).~~**
 - a. **목회자 회원 또는 현직 감독의 재판에 관한 재판 법원의 상소된 모든 결정을 각하, 확정, 수정, 환송 또는 파기한다(¶ 915.1.h).**
 - b. **교회가 상소한 경우, 조사 위원회 또는 재판 법원의 상소된 모든 결정을 각하, 확정하거나 새로운 심리 또는 재판을 위해 환송한다(¶ 915.1.i).**
- c. 조사기관이 내린 불리한 이중위험 판정에 대한 피고소인의 항소를 심리·판단한다(¶ 905.8).

~~¶ 922 ¶ 923.~~ 사건 이송 명령서. 사건 이송 명령서는 다른 기관의 이전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이다. 사건 이송 명령서는 임의 사항이며, 연대상소협의회 위원 3명의 찬성 투표로 부여됩니다. 사건 이송 명령서는 재량사항이며 연대상소협의회 회원 3명의 찬성 투표로 허가된다.

~~¶ 923 ¶ 924.~~ 결정. 연대상소협의회의 모든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결정은 각 사안의 이해 당사자에게 즉시 전달되어야 하며 공개 검토를 위해 전자적으로 게시되어야 한다.

~~¶ 924 ¶ 925.~~ 이전 판정의 유효성. 감리교회 및 연합감리교회 사법위원회와 같은 전신 감리교 기구의 결정은 연대상소협의회의 변론에서 인용될 수 있지만, 연대상소협의회가 결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전 판정의 유효성을 갖는다.

법의 주된 원천. 성경과 교리와 장정은 이 제9부에 따라 허가된 모든 사법 및 행정 절차를 위한 법의 주된 원천이다.

• • •

928. “양호한 상태.” 글로벌 메소디스트 교회의 어떤 수준에서든 선출직 또는 임명직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람이 양호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지도자는 “흠이 없어야 하며”, “외부인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가져야 하며”,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2, 7, 8, 11). 교리와 장정의 특정 항은 봉사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 누군가가 “양호한 상태”에 있을 것을 요구한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현재 회원 또는 목회자 지위가 해당 권리 또는 권한의 행사를 허용할 때, 특정 권리, 권한, 직위 또는 봉사에 대하여 양호한 상태에 있다. 그 목적을 위한 양호한 상태는 교리와 장정이 그 사람의 회원 또는 목회자 지위가 적용되는 권리 또는 권한을 수반하지 않거나 이를 제거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할 때에만 상실된다.

고소의 접수 또는 회부, 정의 결의에 이르지 못함, 조사, 조사 기관의 권고, 혐의의 제기, 재판의 계속 또는 상소의 행사는 그 자체로 양호한 상태의 어떠한 권리 또는 권한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종료하지 않는다. 계류 중인 행정 또는 사법 절차는 교리와 장정이 기초가 되는 회원 또는 목회자 지위 변경을 효력 있게 하고 그 지위에 해당 권리 또는 권한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및 그 범위에서만 양호한 상태의 권리 또는 권한에 영향을 미친다. 상소가 교리와 장정에 따른 지위 변경을 정지시키는 경우, 이전 지위의 권리와 권한은 상소 기간 동안 계속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교리와 장정이 명시적으로 허가한 임시 정지 또는 그 밖의 보호 조치를 금지하지 아니하나, 그러한 조치는 교리와 장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결과만을 가진다.

정의 결의 합의는 그 자체로 양호한 상태의 어떠한 권리 또는 권한의 상실을 초래하지 않는다. 정의 결의는 그 합의가 교리와 장정이 허가한 회원 또는 목회자 지위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교리와 장정이 그 지위의 결과로 명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제거하는 권리와 권한에 대해서만 양호한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 • •

추가를 통한 수정:

¶ 710.2.e ¶ 906에 설명된 행정 고소에 대하여, 사역 위원회는 자체 회원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의 평신도 회원을 포함하는 조사 위원회를 파송하여야 한다. ¶ 906에 설명된 행정 고소에 대하여, 사역 위원회는 자체 회원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의 평신도 회원을 포함하는 행정 조사 위원회를 파송하여야 한다.

JA 헌법 개정안 제1호

청원인: 사법 행정 입법 위원회

본문:

¶ 210. 제9조. 사법부—총회는 항소 관련 연대상소협의회를 설치하며, 이 위원회의 회원 수, 임기, 자격 요건은 물론 선거 방법 및 공석 보충 방식에 대해서도 결정한다. 총회는 연대상소협의회를 설치하며, 이 위원회의 회원 수, 임기, 자격 요건은 물론 선거 방법, 공석 보충 및/또는 제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위원회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이 개정안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JA 헌법 개정안 제2호

청원인: 사법 행정 입법 위원회

본문:

총회에서 JA 헌법 개정안 제1호가 통과되면, 총회는 다음과 같은 시행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제921.8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위반 및 구제책. 이 정책을 고의로 위반한 행위(공개하지 않거나 기피하지 않은 경우 포함)는 즉시 의장 및 연대 협의회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연대 협의회는 관련 사실을 조사합니다. 연대 협의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상소연대상소협의회 회원을 제거하는 결의를 할 수 있다. 회원은 전체 연대 협의회에서 변론할 권리를 가집니다.

투표 결과: 28 찬성 / 0 반대 / 0 기권.

위원단 및 위원회 후보자

*는 현재 회원을 나타냅니다.

굵은 이탤릭체로 표시된 사람은 공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입니다.

연대협의회

목회자 4명과 평신도 4명을 선출하며, 임원은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전문성과 균형을 고려하여 연대 협의회에서 4명의 회원을 추가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목회자

제레미 바비 – 웨스트 플레인스

라이언 바넷 – 미드-텍사스

타일러 베스트 – 그레이트 레이크스

존 베이어스 – 노스 조지아

아티 카다르 – 트리니티

토드 찬시 – 미드사우스

김 콜린스 – 노스캐롤라이나

루치아노 다 실바 – 파나마

가브리엘라 코파스 – 중부 유럽

제시카 라그론 – 트리니티*

헨리에트 오켈레 – 콩고 민주 공화국*

스콧 패티슨 – 그레이트 레이크스

다니엘 토팔스키 – 불가리아

지미 타우슨 – 사우스 조지아

평신도

진 플루어 – 앨라배마 에메랄드 코스트*

줄리엣 제레 – 말라위

유진 박 – 한국계 미국인

맥 파커 – 노스캐롤라이나

실라 산카르 – 인도

태미 스톱 – 노스캐롤라이나

항소위원회

전체 명단에서 목회자 4명과 평신도 3명을 선출하고, 동일한 수의 대체위원을 선출한다.

위원회에서 선출된 임원들

목회자

자우디 “닥” 아비아데 – 그레이트 레이크스*

배윙택

스티븐 벨 – 트리니티*

에베네저 벨레 – 그레이인 코스트

엘리엇 치크웬제레 - 짐바브웨
다니엘 풀턴 - 미드사우스
폴 이디 - 나이지리아 북동부
리처드 존스 - 웨스트 플레인스*
존 칼람보 - 잠비아
남성원 - 한국계 미국인
스타니슬라프 프로코로프 - 러시아 중부
제이 테렐 - 플로리다
로버트 질하버 - 앨러게니 웨스트

평신도

제임스 배니스터 - 사우스캐롤라이나
론 앤스 - 웨스트 플레인스*
마르셀 카쿠지 팔리아라 - 콩고 민주 공화국
세릴 가디아 - 메가 마닐라
베아트리카 일리아 - 나이지리아 북부
세를린 제임스 - 인도
비키 존슨 - 트리니티*
클로데트 콘 칸드 - 콩고 민주 공화국
커티스 쿠르하예크 - 미드-텍사스
마르티나 루키치 - 중부 유럽
에스더 음와니키 - 케냐
기디언 살라탄 - 언악 필리핀*
데이비드 스몰리 - 앨라배마 에메랄드 코스트

회의

목회자 6명과 평신도 6명을 선거한다
추가 회원은 없음

목회자

클라크 앳킨스 주니어 - 트리니티*
존 하워드 - 노스캐롤라이나
조나단 리 - 중서부 북부 지역
마이클 모리세이 주니어 - 미드사우스
워싱턴 엠마누엘 음텐데 - 말라위
월턴 오동고 - 케냐
류계환(케빈) - 한국계 미국인
알반 아무르 곤다 야고조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평신도

커스틴 메인스 - 그레이트 레이크스
제임스 마사코이 - 그레인 코스트

브레이언 조지 음와칼링가 - 탄자니아
폴린 은툼부라 - 아프리카 마카리시
로리 스미스 - 미시시피-서부 테네시*
프랭키 왓슨 - 트리니티
미키 휠러 - 미드-텍사스*

제자도, 교리, 그리고 공정한 사역

10명을 선거하되, 그중 절반 이상은 평신도로 구성해야 한다
연대 협의회는 전문성과 균형을 위해 5명의 회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목회자

케네스 콜린스 - 미드사우스
데이비드 데 실바 - 플로리다
마이클 딜런 - 그레이트 레이크스
칼리 에크 - 하트랜드
드류 홀랜드 - 미시시피-서부 테네시
잭 잭슨 - 플로리다
테디우스 J. 김 - 한국계 미국인
마틴 롱강가 - 콩고 민주 공화국
존 웨인 맥맨 - 트리니티
수잔 니콜슨 - 미드사우스*
데니스 오바디아 - 나이지리아 남부
비르질리오 올로난 - 연약 필리핀
세이 레이엔가 - 미드-텍사스
데이비드 류(성수) - 한국계 미국인
트래비스 스티빅 - 어퍼 미드웨스트
블라디미르 젤레조프 - 불가리아

평신도

파우 아이-본테 - 러시아 동부·중앙아시아
그레그 베네필 - 미드사우스
질 데이비스 - 그레이트 레이크스
니키 딜라드 - 웨스트 플레인스
캐슬린 앵글먼 - 그레이트 레이크스
조나단 S. 전 - 한국계 미국인
엘레나 멜니코바 - 러시아 중부
크리스타 페티트 - 북동부
캐시 로어스 - 앨러게니 웨스트*
놀리즈위 스토펠라 -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큐메니칼 관계

목회자 4명과 평신도 4명을 선출하며, 감독이 위원단을 의장한다
추가 회원은 없음

목회자

디사시 옴바 잠바 - 콩고 민주 공화국
릭 라듀 - 북동부

삼손 무젠게자 - 짐바브웨

데보 오나반조 - 앨러게니 웨스트

사키우사 바카데와타부아 주니어 - 하트랜드*

바트로슬라브 주판치치 - 중부 유럽*

평신도

브리짓 더글라스 - 그레이트 레이크스
린다 이시 - 미시시피·서부 테네시

칸콜롱고 존슨 - 콩고 민주 공화국

콜린 리스 - 그레이트 레이크스

데비 스몰리 - 앨라배마 에메랄드 코스트*

손기호 D. - 한국계 미국인

엘레나 소콜로바 - 러시아 북서부-벨라루스

시드 스트레벡 - 웨스트 플레인스

재무, 행정, 연금 및 복지제도

10명의 회원 중 최소 절반은 평신도로 선출한다
연대 협의회는 전문성과 균형을 위해 5명의 회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목회자

해리슨 벨 - 앨라배마 에메랄드 코스트*

리처드 몽가 카무올보 - 콩고 민주 공화국
김성수 - 한국계 미국인

비비안 키니어 - 트리니티*

마이클 린지 - 미시시피·서부 테네시
댄 라이언스 - 노스캐롤라이나

제임스 노블 - 미드-텍사스*

매튜 실 - 미드사우스*

엘리자베스 윙거 - 하트랜드

평신도

셰리 오스틴 - 그레이트 레이크스*

올란도르 보이스 - 그레이인 코스트*

린지 클라크 - 노스캐롤라이나

르네아 클레벤저 - 그레이트 레이크스
리처드 크롤 - 하트랜드*
데이브 엘리야 - 플로리다
톰 핀리 - 그레이트 레이크스
샘 그레고리 - 웨스트 플레인스*
지젤 카베지아 니오타 - 콩고 민주 공화국
조이 페리 - 앨러게니 웨스트*
루보 트웨트와 -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빈 본 - 플로리다

총회 위원단

16명의 회원을 선거하며, 그중 최소 절반은 평신도여야 한다
연대 협의회는 전문성과 균형을 위해 8명의 회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목회자

배윙택 - 한국계 미국인
베스 앤 쿡 - 그레이트 레이크스*
음빙젤레리 디코 - 남아프리카 공화국*
마이크 그랜트 - 앨러게니 웨스트*
조이 그리핀 - 노스 조지아*
벤 휴브너 - 미드텍사스
김일영 윌리엄 - 한국계 미국인
찰스 푸노 - 메가 마닐라*
데이비드 류(성수) - 한국계 미국인
니콜라스 무농고 수키사 - 콩고 민주 공화국*

평신도

엘리자베스 핁크 - 트리니티
데이나 길리엄 - 노스 앨라배마
에프라임 이브라힘 젠 - 나이지리아 남부
인나 킴 - 러시아 중부
브리짓 커크 - 하트랜드*
무리엘 넬슨 - 그레이인 코스트
월터 오두케 - 케냐
기프트슨 라잔 - 인도
스테이시 테일러 - 북동부*
맨디 화이트 - 웨스트 플레인스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

60%의 찬성표로 평신도 6명과 목회자 6명을 선출한다
위원회에서 실시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임원진으로 구성되며, 추가 회원은 없음

목회자

제이슨 번햄 - 트리니티*

김일영 윌리엄 - 한국계 미국인

테디우스 J. 김 - 한국계 미국인

로빈 파 - 노스 조지아

크리스 리터 - 그레이트 레이크스*

조앤 터말립 발렌수엘라 - 메가 마닐라*

애런 오파 양키 - 그레이인 코스트*

사라 완크 - 그레이트 레이크스*

키라 유페레바 - 러시아 중부

평신도

돈 버랜드 - 미시시피·서부 테네시*

앨런 캠벨 - 중서부 북부 지역

패트릭 치바기디 - 짐바브웨

브래드 폴섬 - 사우스 조지아

타이슨 하인스 - 하트랜드*

세르게이 김 - 러시아 중부

사라 마허 - 앨러게니 웨스트*

노리스 음바요 응고이 - 콩고 민주 공화국

예브게니 세마슈코 - 불가리아

손기호 D. - 한국계 미국인

왕국의 확장

평신도 6명과 목회자 5명을 선출한다

연대 협의회는 전문성과 균형을 위해 6명의 회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목회자

파일루마 아페아키 - 웨스턴 스테이트

웨스 그리핀 - 노스 조지아*

조슈아 존슨 - 하트랜드

패트릭 마가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카바흐 음웬제 - 콩고 민주 공화국*

필 로저스 - 어퍼 미드웨스트

로라 사펠 - 앨러게니 웨스트

셰리 타바카-모리세이 - 미드사우스

팀 터너 - 트리니티

마틴 카송고 와쿠바트와 - 콩고 민주 공화국

그렉 웨스트 - 버지니아*

평신도

다이애나 브리셀리 - 북동부

빌 브라운 - 하트랜드

다니엘 벅 - 그레이트 레이크스

데이비드 도티 - 그레이트 레이크스

짐 플루리 - 플로리다

제프 저니건 - 노스 조지아*

로비 칼리통기 - 잠비아

강윤희 - 한국계 미국인*

엘레나 리오부슈키나 - 러시아 남부

마리엘라 미하일로바-시데로바 - 불가리아*

안젤로 페레즈 - 언약 필리핀

종교 및 고등 교육

목회자 5명과 평신도 5명을 선출한다

연대 협의회는 전문성과 균형을 위해 5명의 회원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목회자

달마 크립 - 노스캐롤라이나

브래드 더시 - 하트랜드

다니엘 길드너 - 앨러게니 웨스트*

코라 무징가 - 콩고 민주 공화국

남성원 - 한국계 미국인

세르게이 니콜라예프 - 러시아 중부

버트 팔머 - 트리니티

로렌 포터 - 미시시피-서부 테네시

타디우스 세일즈 - 북동부

트래비스 스티빅 - 어퍼 미드웨스트

마르가리타 토도로바 - 불가리아

레슬리 톰린슨 - 미드-텍사스 (의장)*

제이미 월리스 - 하트랜드

크리스토퍼 와이즈 - 그레이트 레이크스

평신도

다이애나 카바우아탄 - 언약 필리핀*

제인 핀리 - 노스 조지아*

오드라 게인스 - 미시시피·서부 테네시

엘렌 하빈 - 오대호

조나단 S. 전 - 한국계 미국인

리사 저드 - 사우스캐롤라이나

켈빈 코피 - 러시아 동부·중앙아시아

다니엘라 응고이 마상구 - 콩고 민주 공화국
니코데메 카토콜로 은돔바 - 콩고 민주 공화국
캐서린 설리번 - 트리니티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ይህ ገጽ ሆኖ ተቀላቅሎ ባደቀብዎታ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